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89
----------	------

제출년월일 : 2009. 9. 3.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셋째이상 자녀 교복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료 경감,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함(안 제2조).
-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건을 신청일 기준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함(안 제8조).
- 학자금 대상을 관내 학교 졸업을 삭제하여 지급 조건을 완화함(안 제12조).
-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동·하복) 전액을 지원함(안 제14조).
- 공공시설 감면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부 칙)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150,000천원(교복비)

- 산출근거 : 300명 × 25만원 × 2회 = 150,000,000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1건(반영)

- 입법예고기간 : 2009. 7. 28. - 8. 18. (20일간)

시민의견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이상 자녀를 셋째이상 자녀와 부모로 확대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및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하여 셋째이상자녀에서 다자녀 가정(자녀+부모)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 동시 혜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p>반영</p> <p>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위하여 반영</p>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지원) ① 시장은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 교복비”(이하 “교복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양육비) 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

제4장의 제목을 “다자녀 학자금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관내 초·중학교 졸업 후(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다.)”와 제2호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 후(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제3호 중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 호에서 거주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교복비) ① 교복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 또는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① 교복비는 동·하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복비 지원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현행 제1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학자금”을 “학자금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포함한 학자금 지급계획”을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2. 납입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

③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 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현행 제15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제12조”를 “제 12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8조(현행 제16조)부터 제20조(현행 제18조)까지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 등”으로 하고 제19조(현행 제17조) 본문 중 “국가 등”을 “국가 등 행정기관”으로 하고 단서의 “국가 등의”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문화·생활체육·취미·교양강좌 수강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50%” 다음에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0%”를 추가한다.

②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10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는 수영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④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연습사용료의 비교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⑥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제10조관련)의 단체 및 개인 사용료증,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수 있다”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영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⑦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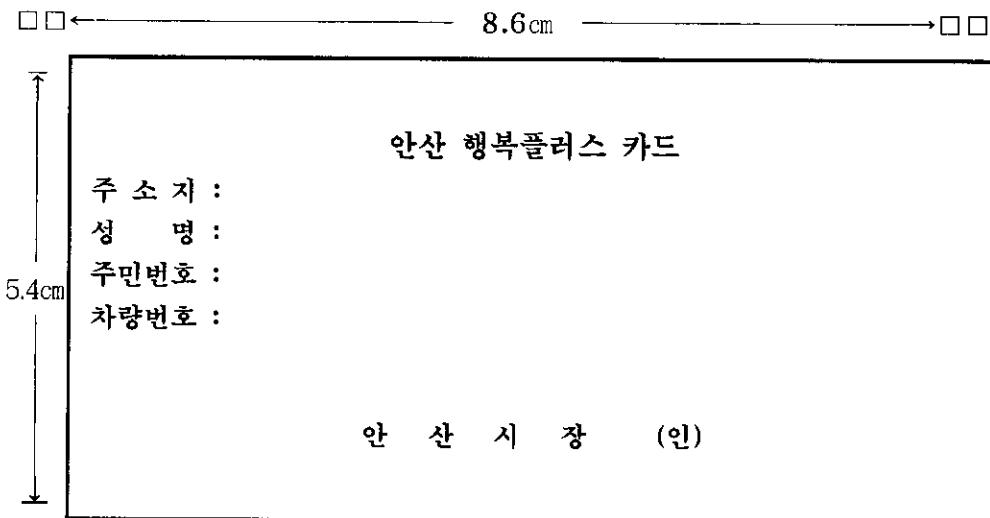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담당·팀장 직위·성명	출산정책담당 전성배
	담당자 성명·전화	구본석 (행정 2606)

[별표]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제작 기준(제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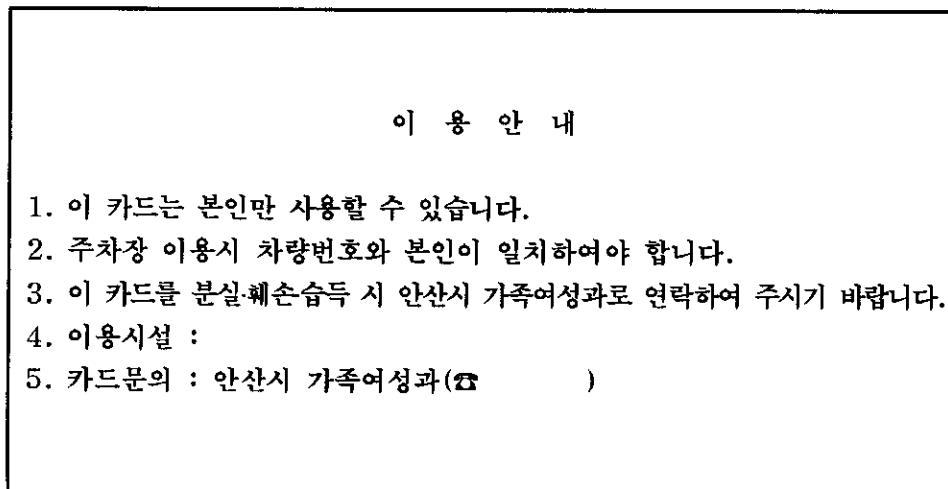
(앞면)



- 비 고 -

- 바탕 : 혼합색
- 재질 : 플라스틱
-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학자금·교복비) 지원 신청서(제16조 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자녀(학자금·교복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납입금 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각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다자녀(학자금·교복비) 지원 대상 확인서]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확인사항	출생순위	자녀 중 째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신학교	학교 졸업(년)						
지원 여부	지원(), 제외()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의 구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은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비 및 다자녀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p> <p>② <신설></p> <p>③ <신설></p>	<p>제2조(지원) ① 시장은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신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3조(용어의 정의)</p> <p>.....</p> <p>1. “다자녀 가정” 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5. “다자녀 교복비” (이하 “교복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p>
<p>제8조(양육비) 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한부모 가정을 포함)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p> <p>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셋 이상의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재혼한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p> <p>② (생략)</p>	<p>제8조(양육비) 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매년 학자금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급 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납입증명서 3. (생략) 	<p>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학자금 등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급 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학자금 등을 시장에게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납입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p>제15조(학자금 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 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p>	<p>제17조(지원방법) ① 학자금 등 제12조 및 제14조에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자금 등</p>
제5장 보 칙	제5장 보 칙
<p>제16조(환수 등) 시장은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차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환수 등) 학자금 등</p>
<p>제1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의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한다.</p>	<p>제19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학자금 등을 (삭제)</p>
<p>제18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을 관리·작성 하여야 한다.</p>	<p>제20조(대장 등 비치) 학자금 등</p>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89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카드 발급시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 항목별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의 거주관련 문맥을 통일성 있게 변경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 학자금 및 교복비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제14조).
- 학자금 지원 서류를 “거주지 시장” 이 아닌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지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양육비) 제1항의 “세대의”를 “다자녀 가정의”로 한다.

제12조(학자금) 제1항 “시 관내에”를 “관내에”로 하며, “실거주하는”을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2항제3호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4조(교복비) 제1항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제16조(공고 및 신청) 제2항 “거주지 시장에게”를 “시장에게”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